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2009.09.29 제정

2019.07.18 개정

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5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, 그 외 관련 법규(이하 “관련법규”) 및 집합투자기구(이하 “펀드”)의 집합투자계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“수수료 등”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
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나. 성과보수: 회사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금전(법 제86조,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)
- 다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라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/ 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- 바. 채권평가회사보수: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2. 수수료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판매수수료: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된다.

나. 환매수수료: 투자자가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금전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 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된다.

3. 투자일임(투자자문)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(투자자문) 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(투자자문)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그 투자일임(투자자문)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 기준)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- ③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, 인정가능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- ④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⑥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일임 및 자문계약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⑦ 투자일임계약과 자문계약관련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수수료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계약서에 따른다.

제5조(수수료 부과 절차)

- ①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제4조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내부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마케팅부와 운용부서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, 이에 대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② 투자일임(투자자문)수수료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투자일임(투자자문)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,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.

제6조(공시)

동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 사항)

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,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,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2009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